

환경산업의 정의

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” 근거

제2조 3항. "환경산업"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·제작·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·예방·최소화·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나. 그 밖에 환경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제9조(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수입신고 등)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(이하 "제작자등"이라 한다)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·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5. 25., 2012. 2. 1., 2020. 5. 26.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(이하 "수입신고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20. 5. 26.>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

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20. 5. 26.>

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. <신설 2012. 2. 1.>

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·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20. 5. 26.>
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0. 4. 3.] [환경부령 제857호, 2020. 4. 2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제2조(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)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"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. <개정 2010. 3. 2., 2012. 8. 3., 2017. 7. 17., 2018. 3. 29.>

1. 자동차 분야

가.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

1)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

2)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

3)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(일산화탄소·탄화수소·질소산화물·메탄·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) 측정장치,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(일산화탄소·탄화수소·질소산화물·메탄만 해당한다)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

4) 증발가스(탄화수소만 해당한다)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

5)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6)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

나.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

1)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

2)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(일산화탄소·탄화수소·질소산화물·이산화탄소·산소만 해당한다) 측정장치,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

3) 자동차배출가스(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다) 분석기,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

4) 매연측정기

5)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

6)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2. 대기 분야

가. 대기배출가스(이산화황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, 총 탄화수소, 산소에만 해당한다)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나. 굴뚝배출가스(이산화황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불화수소,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, 메탄, 산소, 먼지에만 해당한다) 자동측정기,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다. 대기(이산화황, 일산화탄소, 질소산화물, 오존, 먼지에만 해당한다)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라.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

3. 수질 분야

가.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나.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다.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라.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마.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바.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사.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아.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4. 소음·진동 분야

가.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

나.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

5. 토양 분야

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6. 먹는물 분야

가.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나.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
7. 실내공기질 분야

가. 실내공간 오염물질(포름알데히드, 미세먼지, 휘발성유기화합물, 석면, 총부유세균만 해당한다)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

나. 실내공간 오염물질(포름알데히드,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, 오존, 이산화질소, 라돈만 해당한다)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